

서울특별시의회
제32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4. 2.

서울특별시의회
최유희 의원(국민의힘, 용산2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최윤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」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현재 학교 상징물은 학교 자율로 관리하다 보니 2015년 전국의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편취하는 등 학교상징물을 방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. 이에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,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사용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.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은

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해당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